

오산세교2지구 A3블록 파라곤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예비대상자도 해당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셔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9.27.(수) (예정)]에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경기도 오산시 권동 세교2지구 A3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13개동 총 1,068세대
- 공급개요

주택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주거전용 면적	주거공용 면적	소계				기관추천
민영 주택	68.9425	68	68.9425	24.0907	93.0332	41.8116	134.8448	217	21
	84.9899A	84A	84.9899	29.2752	114.2651	51.5438	165.8089	428	42
	84.8976B	84B	84.8976	29.6419	114.5395	51.4877	166.0272	423	42
	합 계								1,068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주택형(약식표기)		68		84A		84B		소 계		
구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기관추천 (85㎡이하)	장애인	경기도	3	(15)	5	(25)	5	(25)	13	(65)
		서울특별시	1	(5)	3	(15)	2	(10)	6	(30)
		인천광역시	1	(5)	3	(15)	2	(10)	6	(30)
	국가유공자		3	(15)	5	(25)	6	(30)	14	(70)
	장기복무 제대군인		1	(5)	3	(15)	4	(20)	8	(40)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2	(10)	7	(35)	7	(35)	16	(80)
	중소기업 근로자		5	(25)	10	(50)	11	(55)	26	(130)
	철거민		3	(15)	3	(15)	3	(15)	9	(45)
	북한이탈주민		2	(10)	3	(15)	2	(10)	7	(35)
	합 계		21	(105)	42	(210)	42	(210)	105	(525)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 1항에 따라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은 500%임.
- ※ 예비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음.
-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는 예비입주자입니다.
- ※ 상기 내용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예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 공고일(예정)	2023. 09. 27.(수)	청약홈 및 '오산세교2지구 A3블록 파라곤' 분양홈페이지 게시
건본주택 개관일(예정)	2023. 10. 06.(금)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7-2 (오산세교2지구 A3블록 파라곤 건본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일(예정)	2023. 10. 10.(화)	청약홈(www.applyhome.co.kr) 사이트 통한 청약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예정)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2023. 10. 18.(수)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조회 가능

※ 상기 주요일정은 사업추진 인·허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및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 09. 27.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당 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

추천대상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 유공자 등, 장애인	필요 없음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 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입주자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이상인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구분	경기도 및 오산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입니다.
-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수행합니다.
- ※ 해당 주택형태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9.27.예정)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2.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 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 의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 시행일('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대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 신고서상'매매대금납입'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등을 시행일 이후 매매등으로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가능)
5.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등은 제외)
6.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내에 있는 경우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우선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2023.10.10.(화)예정]에 반드시 인터넷 청약접수(청약홈 홈페이지) 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미신청시 당첨자선정 (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동·호배정은 동별,층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동·호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특별공급 당첨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 (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
 - (개별통지 불가, 본인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Ⅲ. 기타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계기관의 장이 우선순위에 따라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등)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한국부동산원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의 전산검색결과(주택소유여부 등)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산검색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당사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일 소명 불가시 해당 기관의 신청 여부,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모두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세대원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되오니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특별공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사항은 추천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해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안내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및 일정은 예정으로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IV. 신청방법 및 신청 시 구비서류

■ 인터넷 청약 접수 원칙

-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접수 시간 09:00~17:30

■ 견본주택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구비서류 미비시 신청이 불가합니다.(접수시간 10:00~14:00)
(일부 노약자 및 장애인 등과 같은 인터넷 정보취약계층에 제한함)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7. 예정)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본인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를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서 (각 1통)

해당서류		내 용
필수	특별공급 신청서	- 신청일에 신청장소(견본주택) 비치
	무주택 서약서	- 신청일에 신청장소(견본주택) 비치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발급용, 용도 : 주택 특별공급 신청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분리세대 시)	-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등본상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 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해당자	기관장의 추천서	- 해당기관 → 사업주체 추천자 별도 통보할 경우 불필요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구비서류	비 고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 인감증명서 1통	- 본인발급용,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장
대리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본인 확인

■ **건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현 장 : 경기도 오산시 권동 세교2지구 A3BL
주택전시관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7-2

오산시 세교 2지구 A3블록 | 총 1,068세대(68㎡/ 84㎡A·B)

- **건본주택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7-2
(오산세교2지구 A3블록 파라곤 건본주택)
- **분양문의 전화**
: 1551 - 1068
- **시행사 : 주식회사 라인하우징**
시공사 : 주식회사 라인건설